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5. 19 선고 2018가단57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

담당변호사 이정한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

변론 종결 2020. 4. 14

판결 선고 2020. 5. 19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의 중개로 2017. 12. 9. 피고 C와 사이에, 피고 C 소유 동력선 E(72톤)를 16억 5,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8. 1. 19. 위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, 그 무렵 위 선박 을인도받아 어업에 사용하여 왔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3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(1)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뒤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보수 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, D 또는 피고들에게 속아 이 사건 선박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

(2) 한편 피고들은 2016.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뒤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신형 레이더 등 부품을 다른 선박에 옮기고 구형 장비로 교체하였다.

(3) 따라서 피고 C은 명의상 계약자로서, 피고 주식회사 B은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5,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후 운영을 위하여 돈을 들여 보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, 위

사실만으로 피고들 또는 D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그리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선박의 부품을 교체하였다는
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문현호